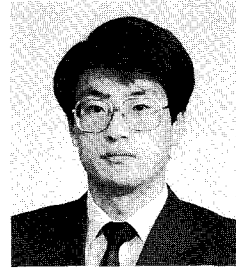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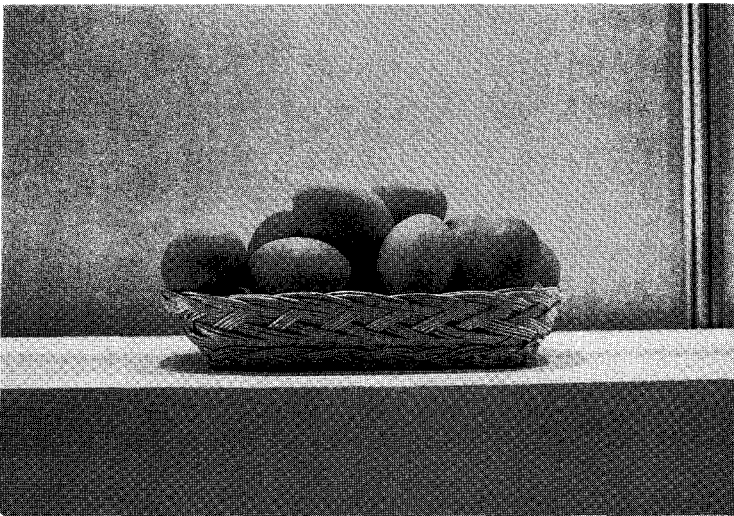
## 축산물 품질인증제(品質認證制)

-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도 -



박 홍 식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식생활 개선 등에 따라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면서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축산기반이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산물을 소비자

**정**부는 UR협상 타결이후 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축산업의 구조개선,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개선 등을 중점

가 안심하고,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성을 손쉽게 구



분할 수 있는 “축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축산물품질인증이란 일정한 기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관리법령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에 대해 품질인증해 주는 것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으로 1995.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업무처리는 농수산물관리법 제 5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0-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품질인증 대상 축산물로 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고 있다. 축산물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는 전국적으로 79개소(경기도 11개소, 강원도 8개소, 충청도 15개소, 호남 20개소, 영남 25개소)가 있다.

축산물 품질인증 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유해성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육제나 산란촉진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물의약품의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에 있어서는 한우고기는 도체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도체등급 B등급이상, 닭고기는 도체중량 0.7kg이상(삼계탕용은 0.3kg 이상), 계란은 자연방사유정란

과 유정란의 생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축산물 품질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축산농가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류는 품질인증신청서(농수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축산물 생산계획서(농림축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은 생산지(사육장)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하고,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생산자 대표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진1〉 축산물 품질인증표지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들의 생산지(사육장, 단위 농가)가 2개이상 시·군, 시·도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생산지 관할 출장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주생산지 출장소는 인증시 필요한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을 관련 지역 출장소에 협조 의뢰하여 조사하게 된다.

축산물은 연중 출하가 가능하므로 일반 농산물과 달리 언제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물 품질인증시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30,000원/건이다.

축산물 품질인증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사육현장, 출하현장(발골장, 가공공장), 시판품 판매현장 등을 조사하게 되며, 축산물의 유해성잔류물질 검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해성잔류물질 검출 조사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품을 1회이상 수거하여 조사하며,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시료는 300g~500g, 닭고기는 1수, 계란은 10개를 채취하여 관계공무원과 소유자 등이 연명으로 봉합 날 인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산지(사육장, 단위 농가)가 2개이상 시·도에 분산된 경우에는 시·도당 1점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성 잔류물질을 조사한다.

축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품질인증 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축산물 품질인증표지는 아래와 같다.

품질인증 축산물에 대하여는 인증사항 및 표시사항과 품질의 일치여부, 인증표시의 허

위·유사, 부정사용 여부 및 유해물질 검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인증 표시 축산물 및 인증품 판매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이상 실시되며, 소비자(단체), 유통업소 등의 조사요청 및 기타 품질인증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에서 위반사항 및 부적격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품질인증 취소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축산물 품질인증 운영 실태에 대해 2000. 8월말로 조사된 설문조사결과의 주요 사항을 보면 2000년 8월말 현재 품질인증농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34개소, 546농가이며, 한우 15천두, 돼지 258천두, 산란계 112천수가 사육되고 있다.

표1. 축산물 품질인증 농가 현황(2000. 8)

구 분	개소수	농가수	사육두수
한우고기	11개소	348호	15,011두
돼지고기	5	176	257,860
계 란	18	22	111,880
계	34	546	384,751

또한, 축산물 품질인증농가는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상품 차별화를 위해 각 농

표2. 품질인증품과 일반축산물 가격 비교(2000. 8)

구 분	품질인증품(A)	일반품(B)	A/B(배)	비 고
쇠고기(원/kg)	36,636	27,354	1.3	등심
돼지고기(원/kg)	9,564	8,630	1.1	삼겹살
계란(원/10개)	1,950	950	2.1	

\* 일반품 가격은 물가조사가격 기준

가별로 차별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지에서 품질인증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쇠고기는 1.3배, 돼지고기는 1.1배, 계란은 2.1배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축산물 품질인증 농가는 차별화된 사양관리를 브랜드화하여 직판장을 확보하여

표3. 축산물 품질인증 농가의 판매장 현황

구 분	직판장	위탁판매장	일반판매장	계
쇠 고 기	29개소	6	-	35
돼지고기	16	33	1	50
계 란	4	8	33	45

상품성 부가 및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품질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물 품질인증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개선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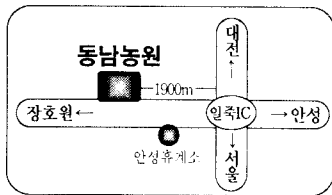
특히 축산물 품질인증농가가 축산물브랜드 사업 및 한우사업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도 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축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446-0160으로 하면 된다) **양계**

# 특수 위탁 전문 부화장

## ♣ 가금류 오리류 관상조류 부화 및 위탁 부화전문

육계, 삼계, 개량 토종닭, 재래 토종닭, 오골계, 옥계, 희피, 투계, 짜보, 청둥오리, 백오리, 칠머조, 메추리, 기러기, 비둘기, 꿩, 자고, 화초 닭, 호로조, 백한, 거위, 은계, 금계, 공작, 원앙, 등 -----( 취미, 부업, 전업, 사육상담 환영 )

가금류, 오리류, 희귀조류, 부화, 분양, 유통, 알선, 위탁판매



## 동남농원 • 부화장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1)672-0088, 휴대폰 : 011-307-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 체 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